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35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3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의무 강화	11
3. 살처분 명령의 근거규정 분리 및 살처분 등 비용의 지원	16
4. 과태료에 관한 사항	2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21.

다. 회 부 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와 시·도지사가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점검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3).
- 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체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 라.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Ⅲ. 검토의견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정안은 i)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ii) 수립한 방역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3개월 이내에 승인받도록 하며,

iii)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계획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iv)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계열화사업자(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현행	개정안
	<u>이행하여야 한다.</u> <u>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방역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적정하게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④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u>

현행	개정안
	<u>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⑤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u>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 계획서의 사본과 방역관리의 결과 사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으로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받는 사업임.¹⁾

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법령은 돼지, 닭, 오리 및 염소를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동물로 지정하고 있어,²⁾ 이들 축종을 대상으로 축산계열화사업이

-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

이루어지고 있음.

이중 가금(家禽)³⁾인 닭과 오리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총 77개소로, 계열화율⁴⁾은 육계·토종닭이 94%, 오리가 92.8%로서 대다수의 육계·토종닭 및 오리 농가가 축산계열화사업 형태로 가축사육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2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현황 】

구분	총계	육계	토종닭	종계	삼계	산란계	오리	복합
사업자 수 (단위: 개)	77	29	3	4	2	0	13	2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들어 계절성(동계)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돼지
2. 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및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3. 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4. 염소

3)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주로 알이나 고기를 식용하기 위하여 기른다. 닭·오리·거위 따위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전체 사육농가 중 축산계열화사업에 따른 계약사육농가 비율

① 상당수의 가금 사육농가가 축산계열화사업의 계약사육농가에 해당 되고, ② 최근 매년 전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의 절반 가량이 축산계열화사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한 방역관리 책임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2023-24년
전체 발생건수	109	47	75	32
계열사 발생건수	48	30	43	15
계열사 발생비율	44.0	63.8	57.3	46.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및 방역기준 준수 점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⁵⁾ 계속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승인을 받은 후 계약사육농가의 방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⁶⁾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24년 동절기의 경우 총 72개 축산계열화사업자(닭 58개, 오리 14개)로 하여금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23.10. ~ '24.2.) 내에 주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관리계획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축산계열화법」의 목적⁷⁾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한 거래와 상

6)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 운영”, 2023. 9. 26.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계약사육농가 역시 해당 계획을 이행하게 되고, 이들에게 수시점검의 수검의무 또한 부여되고 있음.

그런데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관리계획 준수 가능성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수립한 방역관리계획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양자간의 대등한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부령으로 위임된 표준화된 기준이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 유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제한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2년마다 계획수립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강화된 방역책임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부담이 계약사육농가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6조의2제3항의 수시점검과 관련하여 방역관리계획의 승인권자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직접 수시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방역관리계획 감독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권자가

아니므로, 수시점검을 하더라도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의무 강화

현행법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방역교육에 관한 위임사항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48조8).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 -----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	② 축산계열화사업자----- ----- -----

8) 개정안 제48조는 개정안이 현행법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변경함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에 해당함

현행	개정안
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 ----- ----- ----- -----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등록 기준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결과를 계약사육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등록 기준-----점검결과와 개선 조치결과-----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상금 등) ①·② (생략)	제48조(보상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③ -----

현행	개정안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 ----- ----- -----.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6조의3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①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역교육의 내용 및 주기⁹⁾에 관하여 그 위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②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등 준수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그 취지는 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②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위반내용의 통보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점검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수직관계가 심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의 목적에서 제시되는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¹⁰⁾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임.

1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개정안의 형식적 측면 및 자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조 제목을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에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안 제6조의3의 적용 대상이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6조의3제1항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축산계열화사업자”로 약칭하는 부분을 삭제하면서도 그 이후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약칭 삭제부분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통지)하는 의무가 제2항 및 제3항에서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제3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실시·점검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	개정안
<u>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u> <u><신 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u>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신설>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 ③ (생략)	<u>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 소유자등이나 가축방역관이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제4항----- -----.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 소유자등이나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살처분 명령에 관한 근거 조항 분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본문의 일반적 살처분 명령과 단서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¹¹⁾¹²⁾의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이 지나치게 길어 내용과약이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현행법 조항을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법률의 복잡성 및 해석 난이도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행법 제20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제1항에 따른 명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¹³⁾ 이후의 규정들에서도 “제20조제1항에 따른

11) 현행법 제20조제1항에서 본문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단서는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는으나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축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명령하는 규정임

12) 일반적 살처분 명령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89)”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함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

살처분 명령” 등 제20조의 각 항을 인용하는 규정들이 존재하므로, 항 분리에 따른 자구 수정이 필요함.¹⁴⁾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제50조에서 관련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¹⁵⁾ 개정안은 살처분과 사체·오염물건 처리를 규정하는 제20조·제22조·제23조의 개별규정에 비용 지원 사항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동일한 비용지원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0조를 개정하지 않는바, 같은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가 오히려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지원사항을 개별 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는 방식은 현행법의 일괄 규정 방식에 비하여 ① 이 법에 따른 비용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현행법 제20조제2항·제22조제2항·제28조·제48조제1항제3호·제48조제3항제2호·제49조제1항·제4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제56조제1호에서 항 분리에 따른 자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대해서 보상금, 생계안정 등 지원, 심리적·정신적 치료 등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임.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알기 어렵고, ② 같은 사항을 조항마다 반복적으로 규정하여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등의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다만, 현행법에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하여 규정하게 되므로 법체계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4.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안 제6조의2에 따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6조의3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과태료) <신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¹⁶⁾ 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¹⁷⁾ 4.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

현행	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6. (생략) 3의7.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u>축산계열화사업자</u> 3의8. ~ 6. (생략) ②·③ (생략)	<u>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u> 6.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u>축산계열화사업자</u> ② ----- ----- -----.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u> 3의8.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안은 ① 안 제6조의2를 통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② 안 제6조의3을 통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의무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강화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요구되므로, 이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6) “축산계열화사업자”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로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17) “축산계열화사업자”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로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과태료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다른 의무위반 사항에 비해서는 높은 5천만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축산계열화법」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다수 부과하고 있다는 점¹⁸⁾을 고려하면 수용가능한 측면도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안 제6조의2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사육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는 법적으로 해당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5.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
1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한 자
1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가협의회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자
13.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회피한 자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행정벌)의 일종으로,¹⁹⁾ 그 부과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행정법상의 의무 부과가 전제되어야 함.

그런데 개정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만 방역관리계획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는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²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의무부과가 선행되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사인(私人)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수립한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해당 계획에 사실상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6조의2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중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i) 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통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5

19)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04.

20) 개정안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계열화사업자(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방역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ii)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안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동시에 주어진 후, 해당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다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첩된 실효성 확보 수단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고려가 필요해 보임.

셋째, 안 제6조의2의 점검 수인의무와 관련하여, 점검 수인의무자 중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의 경우 과태료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축산계열화법」이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²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약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문 의 처
02)6788-5427